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6991 제출연월일 : 2024. 12.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공공기록물뿐만 아니라 민간기록물과 국외기록물 등 기록물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을 「국가기록물법」으로 변경하고, 기록물관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비전자기록물을 전자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의 조사·수집·보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및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명 및 제3조)

이 법은 공공기록물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생산·취득하는 기록물 및 국외에 소재하는 기록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큰 민간기록물 및 국 외기록물에도 적용되므로 법 제명을 「국가기록물법」으로 변경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 나. 기록물의 정의 명확화 및 세분화(안 제2조제2호, 안 제2조제2호의2부 터 제2호의4까지 신설)
 - 1)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 및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박물류(博物類)로서 장기간 원형 보존이 가능한 고형(固形)의 물건을 '기록물'로 정의하고,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로 구분함.
 - 2)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로, 공공기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생산하거나 취득한 기록물 중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민간기록물'로,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기록물 중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국외기록물'로 각각 정의함.
- 다. 기록관 설치 · 운영의 특례(안 제13조제4항 신설)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각급 학교 등의 공공기관은 기록관의 설치·운영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는 상급 기관 등에 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라. 기록물관리종합계획 및 기록물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 1)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록물 전반의 체계적인 관리와 기록물관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

다 기록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2)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종합계획 에 따라 매년 연도별 기록물관리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 3)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마. 데이터형기록물 관리의 특례(안 제19조제4항 신설)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나, 데이터형기록물의 경우에는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 합으로 관리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하 도록 하되,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영구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함.

바.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ㆍ평가 개선(안 제19조제9항)

공공기관이 기록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의 장이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던 것을, 국가기록원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기록물관리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다른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의지휘·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를 통한 관리(안 제20조의3 신설)

공공기관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자화하기로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비전자기록물을 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파일로 변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준수하고 비전자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하는 즉시 전자화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비전자기록물을 갈음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아. 간행물의 관리 개선(안 제22조)

- 1) 간행물 발간 시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주체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 의 공공기관을 제외함.
- 2) 공공기관이 간행물을 발간하였을 때 그 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 기록만 또는 특수기록관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국가기록원에 송부하도록 하던 것을, 전자적 형태의 간행물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자. 시청각 공공기록물 관리의 특례(안 제23조)

공공기관은 시청각 공공기록물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의 공공기관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청각 공공기록물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차. 박물류 관리의 특례(안 제24조)

공공기관은 박물류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의 공공기관은 국가적 보존 가치가 높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한 박물류는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카. 기록물의 보존가치 재분류에 따른 폐기 제도 개선(안 제27조제2항) 공공기관은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 해당 기록물의 폐기 전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기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자 등이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 · 훈련의 이수(안 제42조제3항 신설)

조치하도록 함.

- 파.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관리 제도 개선(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 1) 국가지정기록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변동사항 관리 및 보존·관리를 국가기록원의 장이 하도록 하 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도록 변경함.
 - 2) 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가치가 유지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가 지정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3)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경우 이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지정사실을 확인하는 증서 및 물품을 교부하도록 함.
- 하.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의 지정 및 민간기록물 등의 관리(안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 신설)
 -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 하여 관리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 도록 함.
 - 2) 공공기관이 수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공개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국가기록물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존 및 국민적 활용·체험 증진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기록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을 "국가기록원, 헌법기관기록원, 지방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기록관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 다. 「지방공기업법」 제3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4장에 따른 지방공단
-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마.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 바. 그 밖에 효율적인 기록물관리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2. "기록물"이란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 및 박물류[博物類, 장기간 원형 보존이 가능한 고형(固形)의 물건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며, 공공기록물,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로 구분한 다.
- 2의2. "공공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 한 기록물을 말한다.
- 2의3. "민간기록물"이란 공공기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생산 하거나 취득한 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적 보 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2의4. "국외기록물"이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

다.

- 2의5. "전자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하거나 접 수한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 2의6. "데이터형기록물"이란 전자기록물 중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데이터세트(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을 말한다) 형태로 관리 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 6.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이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 물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4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공공기록물,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제2항 중 "기록물이"를 "소관 기록물이"로, "활용될"을 "쉽게 활용되거나 체험될"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공공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공공기관의 장 및 기록물관리 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접수되지 아니한 공공기록물(이하 "비전자기록물"이라 한다)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국가기록원"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국가기록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국가기록원을 설치·운영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제3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국가기록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국가기록원의 장은 기록물의 공유 및 국민적 활용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기록물관리기관 및 박물관·도서관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전시물 상호 대여
- 2. 국민이 기록물을 쉽고 편리하게 열람, 관람 및 체험 등을 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전시시설 등의 설치·운영
- 3. 국가의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기 위한 다른 영구기록물관리기 관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 4. 기록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과의 교류·협력 증진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5. 그 밖에 기록물의 공유 및 국민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치 제10조의 제목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을 "(헌법기관기록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국가기록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을

""헌법기관기록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국가기록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헌법기관기록원의 장은 국가기록원"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지방기록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지방기록 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국가기록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지방기록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제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제방기록원의 장은 국가기록원"으로, "국가위임사무"를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관련 정보시스템의 통합 관리, 국가위임사무"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한 기관 내 열람 및 제공
제1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 내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는 상급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기관
- 2.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4조제1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국가기록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한 기관 내 열람 및 제공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을 "제19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해제"를 "해제 등 공공기관의 민간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기록물관리 전반에 관한 국가의 기본정책 수립 1의2. 제15조의2에 따른 기록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3. 기록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 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기록 물(이하 "대통령기록물"이라 한다)의 관리
- 6의2. 제19조제9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평가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각각 "지방기록원"으로 한다.
 - 1. 헌법기관기록원의 장
 - 2. 국가기록원의 장

제3장의2(제15조의2 및 제15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기록물관리종합계획 등

- 제15조의2(기록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록물전반의 체계적인 관리와 기록물관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록물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의3(기록물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공공기관(제13조제4항 각호의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기록물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 및 전

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와 대통령기록물의 생산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 관은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의 제목 "기록물의 생산"을 "공공기록물의 생산"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기록물 생산의 원칙)"을 "(공공기록물 생산 및 관리의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록물로"를 "공공기록물로"로 한 다.

제17조의 제목 "(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를 "(주요 공공기록물의 생산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록물"을 각각 "공공기록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주요 기록물"을 "주요 공공기록물"로, "기록물을"을 각각 "공공기록물을"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을 "(공공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을 "(공공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기록물"을 각각 "공공기록물의"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국가기록원"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기록물의 관리 등)"을 "(공공기록물의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록물"을 각각 "공공기록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공기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공공기록물을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이관하거나 기록물 관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 중 "기록물을"을 "공공기록물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데이터형기록물의 경우에는 이관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영구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전자기록물을 이 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자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관할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

제19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기록물의"를 "공공기록물의"로, "중앙기

록물관리기관"을 "국가기록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기록물의"를 각각 "공공기록물의"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국가기록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기록물의"를 각각 "공공기록물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국가기록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공공기 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별로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소관 기록물에 대해서는 국가 기록원의 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점검 및 평가의 방법 및 절차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1. 국가기록원의 장: 다음 각 목의 기관
 - 가.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은 제외한다)
 - 나. 시·도(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다. 육군·해군·공군본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음 각 목의 기관
 - 가. 소속기관
 - 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3. 제1호다목에 따른 기관의 장: 해당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 하 "시·도지사"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기관
 - 가. 시・군・자치구
 - 나. 그 밖에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5. 시 · 도교육감: 다음 각 목의 기관
 - 가. 교육지원청
 - 나. 그 밖에 시·도교육감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6.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 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⑩ 제9항 본문에 따라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및 평가를 하는 기관의 장은 점검 및 평가 대상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시정 조치를 요구한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한 기관(국가기록원은 제외한다)의 장은 시정 조치 요구의 내용 및 그 처리 결과를 국가기록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를 "(공공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록물"을 "공공기록물(공공기관이 수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국가기록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전자적으로 생산되지아니한 기록물"을 "비전자기록물"로 한다.

② 공공기관(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통령기록물의 생산기관은 제외한다)의 업무 특성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소관 전자기록물에 대하여 국가안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기록물관리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리하여야한다.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각각 "국가기록원"으로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를 통한 관리) ① 공공기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비전자기록물을 제3항에 따른 전자화 방법으로 전자기록물로 보환한 경우에는 원래의 비전자기록물을 갈음하여 해당 전자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원본의 보존을 요구하는 등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자화 대상 비전자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정형화된 서식에 따라 다량으로 생산되거나 접수되는 비전자기록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전자기록물일 것
- 2.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자화하기로 하였을 것
- ③ 제1항에 따른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비전자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하는 즉시 전자화할 것
- 2. 비전자기록물을 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파일로 변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준수할 것
- 3. 전자화한 공공기록물이 원래의 비전자기록물과 그 내용과 형태가 동일하고, 전자화한 공공기록물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 4. 전자화한 공공기록물을 전자화 전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할 수 있을 것
- 5. 해당 비전자기록물에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보존할 수 있을 것제21조의 제목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을 "(중요 공공기록물 등의이중보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록물"을 각각 "공공기록물"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록물 중 보존매체에 수록된 중요 기록물은"을 "공공기록물 중 보존매체에 수록된 중요 공공기록물의

보존매체 사본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공공기록물의 보존매체 사본을 국가기록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의 장은 중요기록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기록원의 장은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하는 기록물 중 이중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중요 민간기록물에 대하여 이중보존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간행물 3부를 각각"을 "국가기록원의 장이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간행물(전자적 형태로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발간된 간행물을 말한다)을"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를 "국가기록원에 각각 제출하여"로한다.

제23조의 제목 "(시청각 기록물의 관리)"를 "(시청각 공공기록물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록물을"을 "공공기록물(이하이 조에서 "시청각 공공기록물"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시청각 공공기록물 중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청각 공공기록물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24조의 제목 "(행정박물의 관리)"를 "(박물류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생산·활용한 형상기록물"을 "생산·접수 또는 취득한 박물류"로, "기록물을"을 "박물류를"로 하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박물류 중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한 박물류는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2조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 2. 제2조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 3.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이 폐지되는 경우 제27조제2항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폐기 전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요 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기 대 상 기록물의 실물을 확인하는 등 폐기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승인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록물평가심의회"로 한다.

② 기록물평가심의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전문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 외교, 안보, 수사, 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7조의3제1항 본문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국가기록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을 "헌법기관기록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국가기록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각각 "국가기록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기록원의 장은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기록물 중 해당 국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고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의 보존시설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각각 "국가기록원"으로 한다.

제30조의2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국가기록원"으로 한다.

제30조의3의 제목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을 "(공공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록물의"를 "공공

기록물의"로 한다.

제7장의 제목 "비밀 기록물의 관리"를 "비밀 공공기록물의 관리"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비밀 기록물 관리의 원칙)"을 "(비밀 공공기록물 관리의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비밀 기록물"을 각각 "비밀 공공기록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비밀 기록물의 관리)"를 "(비밀 공공기록물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비밀 기록물"을 "비밀 공공기록물"로, "기록물의"를 "비밀 공공기록물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비밀 기록물"을 "비밀 공공기록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를 "(비밀 공공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비밀 기록물"을 "비밀 공공기록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를 "(공공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기록물을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의"를 "공공기록물을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록물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기록물을"을 "공공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기록물을"을 "공공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공공기록물을"로, "해당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 경우에는 공개 여부 재분류 절차를 생략하고 기록물을"로 "해당 공공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 경우에는 공개 여부를 제분류한 경우에는 공개 여부를 제품를 생략하고 공공기록물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기록물에"를 각각 "공공기록물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비공개 기록물"을 "비공개 공공기록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을 "제19조제6항 및 제7항"으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공공기록물"로, "기록물을"을 "공공기록물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록물"을 "공공기록물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록 물"을 "공공기록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록물을 공개하려면 미리 그 기록물을"을 "공공기록물을 공개하려면 미리 그 공공기록물을"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공공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국가기록원"으로, "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를 "공공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록물의"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을 "(비공개 공공기록물의 열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공개 기록물에"를 "비공개 공공기록물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기록물"을 각각 "공공기록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공개 기록물을 열람한 자는 그 기록물"을 "비공개 공공기록물을 열람한 자는 그 공공기록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기록물 공개"를 "공공기록물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으로,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록물의"를 "공공기록물의"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국가기록원"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각각 "국가기록원"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국가기록원"으로 한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국가기록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기록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이하 "기록물관리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자 등이 기록물관리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 록물관리 전문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록물관리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제10장의 제목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를 "민간기록물의 수집· 관리 등"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중앙기록 물관리기관의 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통보하여야"를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지정사실을 확인하는 증 서 및 물품을 교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 관의 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보존할"을 "국가기록원에 보존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을 "(중요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의 수집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각각 "국가기록원"으로 한다.

① 국가기록원의 장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② 국가기록원의 장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해당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의 목록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의 제목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을 "(헌법기관기록원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헌법기관기록원의 장 및 지방기록원"으로 한다.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각각 제46조의5 및 제46조의6으로 하고, 제10 장에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소관 공공 기관 중에서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을 지정한 경우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민간기록물에 관한 조사 · 연구 · 교육
- 2. 민간기록물의 수집·복원·보존
- 3. 민간기록물의 전시 등 활용 증진 사업

- 4. 민간기록물 관련 학술교류 및 협력 사업
- 5. 그 밖에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을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사업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국가기록원의 장은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의 민간기록물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해당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을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의 민간기록물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의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의 지정, 지원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의4(민간기록물 등의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이 수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 공개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의 효율적 관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기록만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 중 "비밀 기록물"을 각각 "비밀 공공기록물"로 한다.

제11장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기록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록물"을 "공공기록물(공공기관이 수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3호 중 "기록물"을 "공공기록물"로 한다.

-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공기록 물을 폐기한 사람
- 2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공기록물을 폐기한 사람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록물"을 "공공기록물(공공기관이 수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록물을"을 "공공기록물을 고의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기록물"을 각각 "공공기록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국가기록원"으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장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 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설치된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 록물관리기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 규정에 따른 국가기록원, 헌법기관기록원 및 지방기록원으로 본다.
- 제3조(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법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수 없다.

- 제4조(국가지정기록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 43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 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지정기록물로 본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제43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기산한 다.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다목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을 "「국가기록물법」 제2조제2호의5"로 한다.
 - ②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국가기록물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기록물 제4조 중"「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공공기록물법"이 라 한다)"을"「국가기록물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8항 중 "공공기록물법"을 각각 "「국가기록물법」"

으로 한다.

③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1항제5호 본문 중"「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국가기록물법」"으로 한다.

④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본문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국가기록물법」"으로 한다.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국가기록물법」"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 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 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기록물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 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투명하고 책 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국가 적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존 및 국 민적 활용·체험 증진 등을 위 하여 공공기관에서 기록물을 관 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공공기 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 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 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 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 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 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공공기 록물,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 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 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	제2조(정의)

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
 체(「지방자치법」 제176
 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
 합을 포함한다)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 다. 「지방공기업법」 제3장 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4장에 따른 지방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
 - 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
- 마.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 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바. 그 밖에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2. "기록물"이란 문서・도서・ 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 료 및 박물류[博物類, 장기간
-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 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 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 ·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 원형 보존이 가능한 고형(固 形)의 물건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며, 공공기록 물,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 로 구분한다.

> 2의2. "공공기록물"이란 공공기 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 거나 접수한 기록물을 말한다. 2의3. "민간기록물"이란 공공기 관 외의 법인 · 단체 또는 개 인이 생산하거나 취득한 기록 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의4. "국외기록물"이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기록물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것을 말한다.

> 2의5. "전자기록물"이란 공공기 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 하거나 접수한 기록정보 자료 를 말한다.

2의6. "데이터형기록물"이란 전 자기록물 중 공공기관이 정보

3. • 4. (생략)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전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

<신 설>

- 제4조(공무원 등의 의무) ① (생략)
 - ②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 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

시스템을	통하여	데ㅇ]터서	三
(구조화된	데이터	리의	집합	} 을
말한다) 형	형태로 꼭	관리さ	하는	기
록정보 자	료를 말	한다	•	

3. • 4. (현행과 같음)

J.	 	 	 	
_	 	 	 	
_	 	 	 	

------ 국가기록원, 헌법기관기록원, 지방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 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기록관을 말한다)

6.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이 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여 관리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46조 의3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 한다.

--.

제4조(공무원 등의 의무) ① (현행 과 같음)

- ② -----
- ---- <u>소관 기록물이</u> -----

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제6조(공공기록물의 전자적 생산 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 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 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 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제7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 록물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 •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 관리의 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 기 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고 기 록물을 영구보존 · 관리하기 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소속 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 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 관 소속으로 설치 · 운영되는 영

 쉽게	활용되거나	체험될

•관리) 공공기관의 장 및 기록 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 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ㆍ접 수되지 아니한 공공기록물(이하 "비전자기록물"이라 한다)도 전 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 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국가기록원	
	·•
제9조 <u>(국가기록원)</u> ①	
국가기록원을 설치	• 운영
<u>한다</u> .	
② 국가기록원은 다음 건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u>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u> <u>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u> <u>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1. ~ 10. (생 략)

- ③ <u>중앙기록물관리기관</u>의 장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 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관 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 다.
- ④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의 기록물관리를 총괄·조 정하기 위하여 제3조제5호의 영 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 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	10.	(현행과	같음)
------	-----	------	-----

(3)	<u>국가기독</u>	<u> 원</u>	

- ④ 국가기록원의 장은 기록물의 공유 및 국민적 활용 등이 원활 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기록물관리기관 및 박물관・

 도서관 등 관련 기관과의 정

 보 공유 및 전시물 상호 대여
- 2. 국민이 기록물을 쉽고 편리하게 열람, 관람 및 체험 등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전시시설등의 설치・운영
- 3. 국가의 기록물관리를 총괄· 조정하기 위한 다른 영구기록 물관리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운영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저

- 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소관 기록물의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에 설치·운영하는 영구기 록물관리기관(이하 "헌법기관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3. (생 략)
- 4. <u>중앙기록물관리기관</u>과의 협 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11 11
는 공공기관과의 교류・협력
증진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운영
5. 그 밖에 기록물의 공유 및 국
민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치
10조(헌법기관기록원) ①
7.7) 7)
<u>국가기</u>
록원
②
<u>"헌법기관</u>
기록원"
1. ~ 3. (현행과 같음)
4. <u>국가기록원</u>

4 기록묵 과려 언무를 수해하

및 보존의 분담 5. ~ 7. (생 략)

- ③ <u>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u>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이행과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현황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u>(지방기록물관리기관)</u> ① 7 ~ ⑤ (생 략)
 - ⑥ 시·도기록물관리기관(제2) 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소관 기록물을 시·도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 역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시·군·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제5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치·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 헌법기관기록원의 장은 국가
기록원
,
제11조 <u>(지방기록원)</u> ① ~ ⑤ (현
행과 같음)
6
<u>"지방기록원"</u>
<u>.</u>
1. ~ 4. (현행과 같음)

- 5. <u>중앙기록물관리기관</u>과의 협 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 6. ~ 8. (생략)
- ⑦ 국가는 <u>지방기록물관리기관</u>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수 있다.
- ⑧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이행,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기록물의 원본 또는 사본의 이관, 그 밖에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현황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기록관) 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투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 내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5. <u>국가기록원</u>	-
6. ~ 8. (현행과 같음) ⑦ 지방기록원	_
	-
 ⑧ <u>지방기록원의 장은 국가기록</u> <u>원</u>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자기록 물 관련 정보시스템의 통합 관리, 국가위임사무	<u>-</u>
 제13조(기록관) ①	-
제13소(기숙단) ①	-
<u><단서 삭제></u>	

- ②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
- 1. ~ 3. (생 략)
- 4.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4.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한 기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5. ~ 8. (생략) <신 설>

<신 설>

제14조(특수기록관) ① 통일 · 외 제14조(특수기록관) ① ------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을 장기간 관

2	 	 	 	

- 1. ~ 3. (현행과 같음)
- 관 내 열람 및 제공
- 5. ~ 8.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에 따른 특수기록관을 설치 • 운 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 내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갖는 상급 기관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기록관 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기관
- 2.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리하려는 경우에는 <u>중앙기록물</u>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수 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 다.

- ② (생략)
- ③ 특수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3. (생략)
- 4.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 5. ~ 8. (생략)
-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국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신 설>

- 2. (생략)
-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및 협조 사항

4.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국가기록원
② (현행과 같음)
③
1. ~ 3. (현행과 같음)
4.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한 기
관 내 열람 및 제공
5. ~ 8. (현행과 같음)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 1. 기록물관리 전반에 관한 국
가의 기본정책 수립
1의2. 제15조의2에 따른 기록물
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현행과 같음)
3. 기록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
는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
관과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u>사항</u>

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 5.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승인 및 제35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 연장
- 6.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u>해제</u>

<신 설>

- 7. (생략)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 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 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 1.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
-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 3. (생략)
- 4.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 간 4. 지방기록원-----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
	통령기록물(이하 "대통령기록
	물"이라 한다)의 관리
5.	제19조제6항 및 제7항
6.	
	해제 등 공공기관의 민간기록
	물 관리에 관한 사항
<u>6</u> -	의2. 제19조제9항에 따른 공공
	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평
	<u>가</u>
7.	(현행과 같음)
2)
_	
_	
_	
_	
_	
<u>1.</u>	헌법기관기록원의 장
<u>2.</u>	국가기록원의 장
3.	(현행과 같음)

의 협의를 통하여 선정한 지 -----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 1명 5. (생략)

③ ~ ⑨ (생 략)

<신 설>

<신 설>

방기록원-----

- 5. (현행과 같음)
-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3장의2 기록물관리종합계획 등

제15조의2(기록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록물 전반의 체계적인 관리와 기록물관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 년마다 기록물관리종합계획(이 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 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 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자료 를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 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 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

<신 설>

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기록물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공공기관(제13조제 4항 각 호의 공공기관은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기록물관리시행계획(이하 "시 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 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 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 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 추진실적 을 평가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기록물의 생산

제16조(기록물 생산의 원칙) ① 조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저

①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통령기록물의 생산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기관의장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정할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공기록물의 생산

네162	조 <u>(</u> 공	공기]록둘	를 상]산	및	관리
의	원칙	<u>)</u> (1)				
공 등	공기-	록물	<u>로</u> -				
2	(현	행과	같음	$\left(\frac{0}{1}\right)$			
네17골	조 <u>(주</u>	요 -	공공)	기록	물의	기 산	<u> 산의</u>
<u>무)</u>	1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u>기록물</u>로 생산 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은 주요 업무수행과관련된 시청각 기록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생산하여야 한다.
-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u>주요 기록물</u> 보존을 위하여 관련 <u>기록물을</u> 직접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공공기관 또는 행사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u>기록물을</u> 생산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기록물의 등록・분류・편 제

<u>공공기록물</u>
·.
②
공공기
<u>록물</u>
③
<u>공공기록물</u>
4
주요 공공기록물
<u>공공기록물을</u>
<u>공공기록</u>
물을
]18조 <u>(공공기록물의 등록·분류</u>

철등) 공공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의 특성상 그 등록・분류・편철 등의 방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사・재판 관련 기록물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공 저 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기록물</u>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 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 편철 등)</u>
<u>공공기록물</u>
<u>공공기록</u>
<u>물</u>
<u>구고</u> <u> </u>
기록물의
<u>공공기록물의</u>
<u>국가기</u>
록원
·.
세19조 <u>(공공기록물의 관리 등)</u> ①
<u>공공기록물</u>
②
<u>공공기록물</u>
<u>다만, 관할 기</u>
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되
지 아니한 공공기관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 로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할 영구기록물관 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 여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 물"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록물을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이관하거 나 기록물 관리 부서에서 자체 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공공기록물을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데이터형기록물의 경우에는 이관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영구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자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관할

로 정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관 할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영 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전하 는 방법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

- ⑤ 특수기록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이 지난 후에도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국가정보원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이 예상되는 정보 업무 관련 기록물의 이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 (6) --------- 공공기록 물의 -----국가기록원-----⑦ ----- 제6항---------- 공공기록 ---- 공공기록물의 ---

--- <u>국가기록원</u>-----

① 공공기관은 <u>기록물의</u>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u>기록물의</u> 생산현황을 관할 기록 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중앙행정 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이 그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u>중</u> <u>앙기록물관리기관</u>에 통보하여 야 한다.

8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 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조 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 가정보원의 소관 기록물에 대하 여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 할 수 있다.

<u>⑧</u> <u>공공기록물의</u>
공공기록물의
<u>국</u>
<u>가기록원</u>
⑨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별로 기록물관리 실태
를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소관 기록물에 대해서는 국가기
록원의 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협
의하여 점검 및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국가기록원의 장: 다음 각 목
의 기관

- <u>가.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은</u> <u>제외한다)</u>
- 나. 시·도(교육·학예에 관 한 사항을 포함한다)
- 다. 육군·해군·공군본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음 각목의 기관

가. 소속기관

- 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3. 제1호다목에 따른 기관의 장: 해당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 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시·군·자치구 나. 그 밖에 시·도지사의 지 휘·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신 설>

① 제8항 본문에 따른 시정 조 치의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5. 시·도교육감: 다음 각 목의 기관
 - 가. 교육지원청
 - 나. 그 밖에 시·도교육감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공기 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관
- 6. 시장·군수·구청장: 시장· 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① 제9항 본문에 따라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및 평가를 하는 기관의 장은 점검 및 평가 대상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_____
- 시정 조치를 요구한 기관----

-----. 이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한 기관(국가기록원 은 제외한다)의 장은 시정 조치 요구의 내용 및 그 처리 결과를 국가기록원의 장에게 통보하여 제19조의2(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 제19조의2(공공기록물의 무단 은 아니 된다.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① 중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① 국 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 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 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 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 · 운영 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신 설>

야 한다.

의 금지) 누구든지 기록물을 무 | 닉 등의 금지) ----- 공공기 단으로 손상·은닉·멸실 또는 목물(공공기관이 수집하거나 취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 득하여 관리하는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을 포함한다)-----

<u> 가기록원----</u>

1. ~ 6.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국회, 대법원, 헌법 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와 대통령기록물의 생산기관은 제외한다)의 업무 특성이나 규 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소관 전자기 록물에 대하여 국가안보 등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기록물관리 관련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 ② 전자기록물과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기술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u>중앙기록물관리기관</u>의 장은 전자기록물을 장기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기술정보의 관리 기준과 수집・ 활용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

<u><신 설></u>

<u>한다.</u>	
③ <u>비전자기록물</u>	-
	-
제20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	-
의 관리) ①	-
	-
국가기록원	_
<u> </u>	
· ② 국가기록원	-
<u> </u>	-
	-
	-
	-
제20조의3(비전자기록물의 전자	-
화를 통한 관리) ① 공공기관은	-
제2항에 해당하는 비전자기록	-
물을 제3항에 따른 전자화 방법	_
으로 전자기록물로 변환한 경우	-
에는 원래의 비전자기록물을 길	
음하여 해당 전자기록물을 관리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 서 원본의 보존을 요구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자화 대상 비전자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정형화된 서식에 따라 다량 으로 생산되거나 접수되는 비 전자기록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전자기록물일 것
- 2.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제
 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자화하
 기로 하였을 것
- ③ 제1항에 따른 비전자기록물 의 전자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비전자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하는 즉시 전자화할 것
- 2. 비전자기록물을 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 자파일로 변환하는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준수할 것
- 3. 전자화한 공공기록물이 원래

제21조(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 ① 영구보존으로 분류된 <u>기록물</u> 중 중요한 <u>기록물</u>은 복제본을 제작하여 보존하거나 보존매체 에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중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하는 기록물 중 보존매체에 수록된 중요 기록물은 안전한 분산 보 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의 보존 매체 사본을 중앙기록물관리기

<u>의</u>	비건	년자기	록물	과	ユ	내용	-과
형	태가	동일	하고	, 전]자:	화한	공
공	기록	물의	내용	을	열	람할	수
있	을 7	J					

- 4. 전자화한 공공기록물을 전자
 화 전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
 할 수 있을 것
- 5. 해당 비전자기록물에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보존할 수 있을 것

게21조 <u>(중요 공공기록물 등의 이</u>
<u> 중보존)</u> ① <u>공공기</u>
록물 공공기록물
②
공공기록물 중 보존매체에 수록
된 중요 공공기록물은
공공기록물의
보존매체 사본을 국가기록원

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기록물관리 기관에 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고 보존매체 사본을 송부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간행물의 관리) ① <u>공공기</u> 지 관은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 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발간하는 간행물에 제1항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발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관할

·.
③ 국가기록원의 장은 중요 기
록물
④ 국가기록원의 장은 기록물관
리기관이 보존하는 기록물 중
이중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중요
민간기록물에 대하여 이중보존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간행물의 관리) ① <u>공공기</u>
관(「유아교육법」 및 「초・중
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u> 조에서 같다)</u>
.
②
국가기록원의 장이 정하는 전자
적 형태의 간행물(전자적 형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u>중앙기</u> 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 보존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공 공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사진, 필름, 테이프, 비디오, 음반, 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 형태의 기록물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 공공기 전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 활용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 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대통령령

로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발간된 간행물을 말한다)을
국가기
록원에 각각 제출하여
제23조(시청각 공공기록물의 관
리)
<u>공</u> 공기록물(이
하 이 조에서 "시청각 공공기록
물"이라 한다)을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시청각 공공기록물
중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영
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청각 공공기록물
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24조(박물류의 관리)
<u>생산</u>
•접수 또는 취득한 박물류
박물류를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 고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 로 이관하여야 한다. <단서 신 <u>설</u>>

제25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저 ①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장 은 지체 없이 그 기관의 기록물 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 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록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3조제1호에 따른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u>다만, 「유</u>
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
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
관은 박물류 중 국가적 보존가
치가 높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한 박물
류는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
<u>다.</u>
ll25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2조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 2. 제3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이 민간기관 으로 전환되는 경우 <신 설>
- ②·③ (생 략)
- 제27조(기록물의 폐기) ① (생 략)
 -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재분 류하여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를 준수하여야 한다. <후단 신 설>

③ (생략)

(생략)

경우

- 2. 제2조제1호나목부터 바목까 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이 민 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 3.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 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이 폐 지되는 경우
- ② · ③ (현행과 같음)
- 제27조(기록물의 폐기) ① (현행 과 같음)
 - ②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

-----. 이 경우 공 공기관은 폐기 전에 관할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 기 대상 기록물의 실물을 확인 하는 등 폐기의 적절성을 검토 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다.

- ③ (현행과 같음)
- 제27조의2(기록물평가심의회) ① 제27조의2(기록물평가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3(기록물의 폐기 금지) 저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다만,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소관 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소관 기관의 당한 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소관 기관의 당한 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소관 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소관 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중심 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당은 기관기관의 당은 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당은 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당은 기관기관의 당은 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당은 기관기관의 당은 기관기관의

② 기록물평가심의회는 7명 이
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 외교, 안보, 수사, 정보 분
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
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
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록물평가심의회
제27조의3(기록물의 폐기 금지)
① <u>국가기록원</u>
<u>헌법</u>
<u>기관기록원</u>

록물에 대해서는 미리 그 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u>중앙기록물관리기관</u>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록물의 폐기 금지 조치 및 관리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기록물관리 현황조사 또는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생략)

- 제28조(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 장비)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 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별 시설· 장비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 항에 따른 시설·장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 지 아니하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하여는 <u>중앙기록물관리기관</u> 의 장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기록원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
장비) ① <u>국가기록원</u>
②
<u>국가기록원</u>
.

<신 설>

- 제29조(기록매체 및 용품 등) ① 지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할 때에는 중앙기록 물관리기관과 상호 유통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관리하여야 한다.
 -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에 사용되는 기록매 체·재료 등에 관하여 보존에 적합한 규격을 정하여야 하며, 그 규격의 제정·관리 및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30조의2(보존·복원 기술의 연 저구·개발)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의 장은 기록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및 복원 기술의

③ 국가기록원의 장은 국가기관
이 관리하는 기록물 중 해당 국
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기록물
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을 국가
기록원의 보존시설에 보관하도
록 할 수 있다.
제29조(기록매체 및 용품 등) ①
국가기록
<u>위</u>
<u>국가기록원</u>
·.
② <u>국가기록원</u>
<u>.</u>
제30조의2(보존·복원 기술의 연
구·개발) <u>국가기록원</u>

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의3(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 정)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내용을 부기 또는 정정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7장 비밀 기록물의 관리

제32조(비밀 기록물 관리의 원칙)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전용서고 등 비밀 기록물 관리
체계를 갖추고 전담 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비밀 기록물 취급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 기록물의 관리) ①

제30조의3 <u>(공공기록물의 부기 또</u>
는 정정)
<u>공공기록물의</u>
1. ~ 4. (현행과 같음)
제7장 비밀 공공기록물의 관리
제32조(비밀 공공기록물 관리의
원칙)
<u>비밀</u>
<u>공공기록물</u>
<u>비밀 공공기록물</u>
비밀 공공기
<u> </u>
제33조(비밀 공공기록물의 관리)

공공기관은 <u>비밀 기록물</u>을 생산 할 때에는 그 <u>기록물의</u>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 보 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하 여야 한다.

② <u>비밀 기록물</u>의 원본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 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한 비밀 기록물 원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생산·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서식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u>(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u>
① 공공기관은 관할 기록물관리
기관으로 <u>기록물을 이관하려는</u>

① 비밀 공공기록물
비밀 공공기록물
의
② 비밀 공공기록물
제34조(비밀 공공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비밀 공공기록물
·
· 제35조(공공기록물의 공개 여부
(8 8 기 독실 기 8 기 역 기 역 기 역 기 역 기 역 기 역 기 역 기 역 기 역
<u> </u>
<u> </u>

경우에는 그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최근 5년의 기간 중 해당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 경우에는 공개 여부를 재분류 절차를 생략하고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

- ②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u>기록물에</u> 대해서는 재분류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한 <u>기</u>록물에 대해서는 생산연도 종료후 30년까지 공개여부 재분류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u>비공개 기록물</u>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 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u>제19조제5항 및 제6항</u>에 따

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록물의 -
<u>공공기록물을 이관</u>
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공
공기록물을
해당 공공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 경우에는 공개
여부 재분류 절차를 생략하고
공공기록물을
②
<u>공공기록물에</u>
<u>.</u>
<u>7</u>
공기록물에
③ 비공개 공공기록물
제19조제6항 및 제7항

라 이관시기가 30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u>기록물</u>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 물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을 받으면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각각거쳐 해당 기록물을 공개하지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비공개 유형별 현황을 관보와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하고, 재분류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한다.

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통일 ·외교·안보·수사·정보 분 야의 <u>기록물을 공개하려면 미리</u> 그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의 장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제 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 정)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u>공공기록물</u>
4
공공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공공기록물
<u>공공기록물을</u>
<u>공공기록물</u>
⑤
공공기록물을 공개하려면
미리 그 공공기록물을
]3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공공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국가기록원

된 <u>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u>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 의 성격별로 비공개 상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7조(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① 7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 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u>비공 개 기록물에</u>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람 청구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1. (생 략)
 - 2. 개인이나 단체가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u>기록물</u>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 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 우로서 해당 <u>기록물</u>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이나 단체가 학술연구등 비영리 목적으로 열람을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

<u> </u>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록물의
제37조(비공개 공공기록물의 열
람) ①
개 공공기록물에
1. (현행과 같음)
2
<u>공공기록물</u>
3
<u>공공기록물</u>
4
공공기

- 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 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 ② 제1항에 따라 <u>비공개 기록물을</u> 을 열람한 자는 그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열람신청서에 적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① 영 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 록물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그 밖에 <u>기록물 공개</u> 여부와 관련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② 기록물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u>구성</u>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하며, <u>연임</u>할 수 있다.
 - ③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u>기록물의</u> 공개 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중에서 영구기록물관리

록물
② 비공개 공공기
록물을 열람한 자는 그 공공기
록물
<u>.</u>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①
<u>.</u>
1. (현행과 같음)
2 <u>공공기록물 공개</u>
②
<u>성별을 고려하여 구성</u>
 한 차례만
<u></u> 연임
3
공공기록물의 -

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제39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중 의 왕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 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시행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관리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 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 제40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 차 등)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의 장은 제39조에 따른 기록물 관리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
 - ② <u>중앙기록물관리기관</u>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보급 을 위하여 지도·교육 등 필요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u>국</u>
<u>가기록원</u>
1. ~ 6. (현행과 같음)
제40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
차 등) ① <u>국가기록원</u>
② <u>국가기록원</u>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1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① ·② (생 략)
 - ③ <u>중앙기록물관리기관</u>의 장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포함한 전문인력의 수요 파악 및 양성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2조(기록물관리 교육·훈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41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국가기록원</u>
제42조(기록물관리 교육·훈련)
① 국가기록원
② 국가기록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
훈련(이하 "기록물관리 교육・
훈련"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
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자 등이 기록물관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
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
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제10장 <u>민간기록물 등의</u> 수집·관리

제43조(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이하 "민간기록물"이라 한다)으로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수 있다.

- ② 민간기록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중앙기록물관리기 관의 장에게 그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u>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u>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기록물 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정하는 기록물관리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장 <u>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u> 등

제43조(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 물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간을 정할수 있다.

		행정역	간전부	<u> 장관</u>	
	-1) -1 Al	111-1-	-i		
3	행정안전	<u>1</u> 무상-	<u> </u>		

금 관련 민간기록물의 목록 및 내용의 확인, 그 밖에 필요한 조 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 (생 략)
- 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지정사실을 <u>통보하여야</u>하다.

⑥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로서의 보존가 치를 잃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44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 정 관리)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 자 또는 관리자는 그 국가지정 기록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
④ (현행과 같음)
⑤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
하고, 지정사실을 확인하는 증
서 및 물품을 교부하여야
⑥ 행정안전부장관
세44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
항 관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 제45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 관리)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정 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존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시설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은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보존시 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 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보존할 수 있다.
 -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을 복제하거나

<u>행정안전부장관</u>
1. ~ 4. (현행과 같음)
제45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ㆍ
관리) ① <u>행정안전부장관</u>
.
② <u>행정안전부장관</u>
그기기근이세 ㅂ조치
<u>국가기록원에 보존할</u> -
 ③ <u>행정안전부장관</u>

사본을 제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 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 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 와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의 목록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 조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중요 민간기록물 및 국외 기록물의 수집 등) ① 국가기록 원의 장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 을 수집할 수 있다.

② 국가기록원의 장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에게 해당 민간기록물 및 국외 기록물의 목록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록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지정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영화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원판필름 또는 그 복사본 1벌과대본 1부를 송부하여 줄 것을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방송(재송신은 제외한다)된 프 로그램 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 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 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수 집대상 방송프로그램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은 「방송법」 제 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 송사업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 램의 원본 또는 사본 1부를 송 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④ <u>국가기록원</u>
<u>국가기록원</u>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 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헌법 기관기록물관리기관 및 지방기 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관업무, 관할 공공기관 또는 관할 지역 과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기록물의 수집・보 존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시· 도 및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46조의2(헌법기관기록원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헌법기관기록 원의 장 및 지방기록원------

제46조의3(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 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 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여 관리 하는 소관 공공기관 중에서 민 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을 지정 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에 따라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 관을 지정한 경우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은

<u>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u> <u>다.</u>

- 1. 민간기록물에 관한 조사 · 연 구 · 교육
- 2. 민간기록물의 수집·복원· 보존
- 3. 민간기록물의 전시 등 활용 <u>증진 사업</u>
- 4. 민간기록물 관련 학술교류및 협력 사업
- 5. 그 밖에 민간기록물관리중점 기관을 지정한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에 따라 지정한 민간기록물관리 중점기관에 대하여 제3항에 따 른 사업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국가기록원의 장은 민간기록 물관리중점기관의 민간기록물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가 제28 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민간기록물관 리중점기관을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민간기록

<신 설>

물관리중점기관의 민간기록물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의 개선 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기 록물관리중점기관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의 지정, 지원 및 해제 등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민간기록물 등의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이 수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 공개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46조의3 · 제46조의4 (생 략)

제47조(비밀 누설의 금지) <u>비밀</u>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거 나 <u>비밀 기록물</u>에 접근・열람하 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u><신 설></u>

제50조(벌칙) <u>다음 각 호의 어느</u>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 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따라 관할 기록관 또는 영구기
	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
	<u>다.</u>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기록물 및 국외
	기록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u>46조의5</u> ・ <u>제46조의6</u> (현행 제46
	조의3 및 제46조의4와 같음)
제	47조(비밀 누설의 금지) <u>비밀</u>
	공공기록물
	<u>비밀 공공기록물</u>
	 .
<u>제</u>	49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기록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50조(벌칙) <u>다음 각 호의 어느</u>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한다.

1.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기록 물을 국외로 반출한 사람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심사와 심의를 거치 지 아니하거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

<신 설>

- 3.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폐기 금지의 통보를 받은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
-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기록물 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

- 기록물(공공기관이 수집하거 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민간기 록물 및 국외기록물을 포함한
-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 사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공기록물을 폐기한 사람
- 2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관할 영구기록물관리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 니하고 공공기록물을 폐기한 사람
- ----- 공공기록 물----
-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	한다.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u>기록</u>
 물을 은닉하거나 유출한 사람

- 2. <u>기록물을</u>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
- 3. <u>기록물</u>을 고의 또는 중과실 로 그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
- 4.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 공개 <u>기록물</u>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53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u>중앙</u> <u>기록물관리기관</u>의 장이 부과· 징수한다.

1
기록물(공공기관이 수집하거
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민간기
록물 및 국외기록물을 포함한
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
2. <u>공공기록물을 고의 또는</u>
3. 공공기록물
4
 공공기록물
<u>00/192</u>
제5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955년 1년 (1954년 1977년 1977년 1971년
② <u>국가</u> 기록원
<u>기숙전</u>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 용
1	제20조제2항(전 자기록물의 관리)	기록물관리 관련 정보시스템 통합은 업무 특성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 관리하도록 함.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은 전자기록물의 관리 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여 관리할 수 있음
2	제46조의3제4항 (민간기록물관 리중점기관의 지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에 대하여 사업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3	제46조의3제5항 (민간기록물관 리중점기관의 지정 등)	국가기록원의 장은 민간기록물관리를 위한 시설·장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민간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의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제20조제2항(전 자기록물의 관리)	기존사업을 명문화(추가재정소요 없음)한 사항 -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법률로 명문화
2	제46조의3제4항 (민간기록물관 리중점기관의 지정 등)	기존사업을 명문화(추가재정소요 없음)한 사항 -개별 법률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법률로 명문화
3	제46조의3제5항 (민간기록물관 리중점기관의 지정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2. 상세 사유

- 기록물관리 관련 정보시스템 통합·관리는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기록물 생산·관리통합시스템 1차 사업)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사항임(안 제20조제2항)
-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 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 46조의3제4항)
- ○〈참고〉제46조의3제4항 관련 :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 지정 및 지원관련 현황

소관	교육부	문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지원대상 공공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시·도에서 설립한 국학관련 기관 * 한국국학진흥원(안동), 한국학 호남진흥원(광주), 한국유교문화 진흥원(논산), 율곡연구원(강릉)	새마을운동중앙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독립기념관
법적 근거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한국고전번역원법 동북아역사재단법	▶ 문체부의「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사업」으로 지원중(02~)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강제동원조사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독립기념관법
전체 지원액 (운영비 포함)	한국학: 362억원 고전번역: 247억원 동북아: 157억원	4개 사도 국비지원 합계 : 96억원 (경북 28, 광주 31, 충남 22, 강원 14) * 시·도 매칭 합계: 96억원	새마을: 9억원 강제동원: 81억원 민주화: 168억원	290억

○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관리 총괄·조정하는 기관으로서,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의 시설·장비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지원한다는 선언적 인 조항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안 제46조의3제5항)

Ⅲ. 부대의견

О

Ⅳ.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이윤경	김재훈	신종필	김영빈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재훈	042-481-6236	goldmouth@mail.go.kr